

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2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도시계획과장 최송천)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규 등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의 정합성 확보 및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중 재검토 정비시기를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규정의 정비시기·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함 (안 제4조)

나. 강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
(안 제22조 ~ 제2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,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8. 23.~9. 12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개선의견 미반영

- 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 강서구 주민참여 기회를 포괄하여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주민의 분류를 세분 구별하여 명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
-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상 광역도시 계획에 따른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항 명시는 실효성이 적으며,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은 본 비법정계획인 강서구도시발전기본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세부실행 사업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개선의견 미반영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·정비 기간 변경(안 제4조)
 - 기존 4년(구청장 임기와 연동) → 5년으로 변경함
 - 이는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¹⁾에 따라 정비되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재검토 기간(5년)과 동일하도록 시기를 조정함
-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(안 제8조 제1항)
 - 기존 ‘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’ 내 ‘도시·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’ 하여 구성할 수 있는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,
-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(제2절, 안 제22조~제25조)
 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²⁾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함
 - 공동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(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)

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정비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·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2) 제63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 ① 제56조, 제57조제4항부터 제11항,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58조의2, 제58조의3,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. ②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-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서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(건축위원회 위원이 1/3 이상이 되도록 함)

○ 그 밖의 조항의 오류 사항 정비(안 제9조, 제14조)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정비기간을 조정하고,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(변경) 시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라 권한위임사무의 처리 시 등에, 도시·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
-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통해, 권한 위임에 따른 행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참 고

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자치구 운영현황

□ 서울시 자치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현황

운영여부	운 영	미 운 영
서울시(1)	도시관리과	-
자치구(25)	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양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, 마포구	강서구, 광진구 ※ 광진구 :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항 없이 통합 운영

□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상정 안건 현황

구 분	계	2020년 (3회 개최)	2021년 (5회 개최)	2022년 (4회 개최)	2023년 (2회 개최)
총 상정안건	60건	15건	26건	15건	4건
도시계획	14건	4건	2건	7건	1건
지구단위계획	44건	11건	23건	7건	3건
기 타	2건	-	1건	1건	-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3조(도시·군기본계획의 정비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·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
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(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)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
제63조(공동위원회의 운영) ②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68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